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7. 8 선고 2019가단3116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6. 10.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가. 피고와 C 및 D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2, 5, 21 기재 각 부동산 중 C, D의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4. 8.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 D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2, 5, 21 기재 각 부동산 중 C, D의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278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C 및 D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3, 4, 6 내지 20 기재 각 부동산 중 C, D의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4. 8.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78,477,19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8,477,1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차718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원금 965,276,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는 D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1. 3. 25.자 법무법인 E 2011년 증서 제334호)에 기한 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 D의 재산 처분행위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F이 2014. 8. 20.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3/9 지분), 자녀들인 C, D, G(각 2/9 지분)이 있었다.

(2) 피고와 C, D, G은 2014. 8. 20. F의 상속재산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 D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는 상속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앞서 본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C, D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 D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는바, 이 사건 분할협의를 C, D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 D은 이로 인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 즉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속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선의의 취득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인데, C, D과 피고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제1, 2, 5, 21 기재 각 부동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 D에게 C, D의 상속지분인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제1, 2, 4, 2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278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제3, 4, 6 내지 20 기재 각 부동산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나아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수익자는 자신이 취득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I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제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18. 4. 9.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19. 3. 20. 채권자 I조합에게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제6 내지 2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J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되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K)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피고가 취득한 위 각 부동산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L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가 취득한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이 합계 693,426,960원(각 부동산별 가액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와 같음)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516,853,280원(= L조합 200,000,000원 + I조합 16,853,280원 + J 3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부동산의 실질가액은 176,573,680원(= 693,426,960원 - 516,853,280원)이 되고, 그 중 C과 D의 상속지분(합계 4/9)에 해당하는 가액은 78,477,191원(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가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위 각 부동산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인

78,477,191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C 및 D 사이의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3, 4, 6 내지 21 부동산 중 C, D의 각 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78,477,19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8,477,1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만